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1. 7. 31

나. 회부일자 : 1991. 8. 1

3. 제안사유

- 대통령령(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개정(령제 13403호 1991. 6. 27)에 따라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중 원장의 보직을 복수직화 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보건환경연구원장의 직렬 “지방 보건 연구관”을 “지방 보건 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복수직화(조례 제4조)

5. 검토의견

-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 및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건환경 연구원법(법률 제4356호 1991. 3. 8)이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6조 제2항에 원장의 자격을 보건,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임용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대통령령(제13403호 1991. 6. 27)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환경연구분야 업무비중의 확대 및 세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건 연구직렬을 “보건연구직렬과 환경연구직렬”로 분리하여 복수직화 하는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6. 관계법령 : 별첨

충청북도조례제 호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원장) 제1항중 “지방보건연구원”을 “지방보건연구원 또는 지방환경연구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4 조(원장) ①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p> <p>②(생략)</p>	<p>제 4 조(원장) ①연구원에 원장을 두며,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p> <p>②(현행과 같음)</p>